

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9월 14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환경 유통센터의 정의를 농수산물식품공사의 기능에 맞게 수정하고,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제8호).
-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8조의3제1항제9호)

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8호 중 “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유의 시설”을 “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유의 시설”로 한다.

안 제8조의3제1항제9호 중 “학교급식 고객”을 “이용학교에 대한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~7.(생략)</p> <p>8. “친환경유통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</u>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~7.(생략)</p> <p>8. “친환경유통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<u>친환경급식 식재료</u> 공급하는 <u>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</u>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~7.(생략)</p> <p>8.“친환경유통센터”란 <u>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</u>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.</p>
<p>제8조의3(<u>친환경유통센터</u>)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(이하 “친환경유통센터”라 한다)</u>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8. <u>친환경유통센터</u>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</p> <p>9.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</p>	<p>제8조의3(<u>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</u>)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<u>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</u>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</p> <p>9. <u>학교급식 고객</u> 만족도 조사 및 평가</p>	<p>제8조의3(<u>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</u>)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~7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</p> <p>9. <u>이용학교에 대한</u> 만족도 조사 및 평가</p>

#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“친환경유통센터”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중 “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”을 “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친환경 학교급식”을 “친환경 학교급식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의 제목 중 “친환경유통센터”를 “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은 삭제한다.

- 제8조의3(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)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
2. 식재료 공급·배송업체 선정, 평가 및 관리
3. 공급·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,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
4.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
5. 납품 농·수·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
6. 우수 농·수·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
7.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
8.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
9.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
10.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
11.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12.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<u>친환경유통센터</u>”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제8조의2(<u>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</u>) ① 시장은 효율적인 <u>친환경 학교급식</u>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의3(<u>친환경유통센터</u>) ① <u>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(이하 “친환경유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<u>친환경유통센터</u>”란 <u>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제8조의2(<u>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</u>) ① 시장은 효율적인 <u>친환경 학교급식</u>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의3(<u>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</u>) ① <u>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<u>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</u></p> <p>2. <u>식재료 공급·배송업체 선정, 평가 및 관리</u></p> <p>3. <u>공급·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,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</u></p>

현 행	수 정 안
	<p>4.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</p> <p>5. <u>납품 농·수·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</u></p> <p>6. <u>우수 농·수·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</u></p> <p>7. <u>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 위원회 구성·운영</u></p> <p>9. <u>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</u></p> <p>10. <u>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</u></p> <p>11. <u>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<p>② <u>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<u>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</u></p> <p>2. <u>식재료 공급·배송업체 선정, 평가 및 관리</u></p> <p>3. <u>공급·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,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</u></p>	<p>② <u>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.</u></p>

현 행	수 정 안
<p>4.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</p> <p>5. 납품 농·수·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</p> <p>6. 우수 농·수·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</p> <p>7.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</p> <p>8.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</p> <p>9.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</p> <p>10.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를 결정 및 관리</p> <p>11.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12.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
<p>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위탁한다.</p>	<p>&lt; 삭제 &gt;</p>